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1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허가받은 작업장 외에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 등 허용 확대	4
2.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규정 삭제	10
3.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등	15
4.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용어 통일 등	24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7.

(3) 회 부 일 : 2025. 3. 28.

나. 제안이유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

을 임차하여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가 이미 면제된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달걀을 위탁받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달걀 판매를 허용('23.3)하였으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 4)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평가’ 용어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7조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허가받은 작업장 외에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 등 허용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하되,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현행	개정안
② ~ ⑩ (생략)	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② ~ ⑩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1년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제1항¹⁾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²⁾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하되,

i)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ii)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iii)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함)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³⁾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작업장 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⁴⁾ 및 [별표 10]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취급시설 중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안은 축산물 관련 영업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살균, 멸균, 급속냉동 공정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까지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공정 등 위탁 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 시설기준(별표 10] 영업종류별 시설기준)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취급시설 중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동일한 중요관리점으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의 시설을 사용해야 함.

√ 준수사항(별표 1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등 준수사항)

-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을 위해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시설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조방법 설명서에 포함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임차한 시설에 대해 위생관리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초고압살균기는 5억~20억원, 멸균기는 약 5,000만원, 급속냉동기는 10억~30억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공정시설의 임차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안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대상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중 어디까지를 허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멸균·살균·급속냉동에 사용되는 시설 종류 및 비용 >

	
멸균기 (설치비 약 5,000만원)	초고압(HPP) 살균기 (설치비: 약 5억~20억)
	
급속냉동기 (설치비: 형태에 따라 10억~30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가공품의 일부 공정(살균·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에 한정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식품 제조·가공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고액의 장비를 갖

취야 했던 영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동 개정법
률안에 동의함.

□ (사)한국육가공협회:

- 축산물작업장에만 한정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일부 공정 위탁을
허용하던 것을 식품제조시설까지 확대가 필요함.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생략)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삭 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삭 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함)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함)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도록 하되,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5) 「식품위생법」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와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 즉, 현재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현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모두 작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도축업·집유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비교해 보면, 자체위생관리기준의 항목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는 2개 기준을 모두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⁷⁾⁸⁾

□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2024년 12월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가 완료되어 현행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이 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인 도축업의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가 완료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

6) 「식품위생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보면, 도축업은 7개 항목, 집유업은 6개 항목의 개별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고시) 제5조 [별표 1]에 따른 선행요건의 경우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검사 관리 등 도축업이 57개 항목, 집유업이 56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음.

8) [참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비교

기준 작성·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营业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동 조항에서도 ‘집유업’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비교〉

분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형태	<u>영업자 스스로</u> <u>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u> (* 영업자 요청 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발급)	<u>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u> <u>서류·현장평가를 통해</u> <u>HACCP 인증</u>	
관리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대상	도축업·집유업	의무적용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¹⁾ 식용란선별포장업,
		자율적용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HACCP 조사평가	농식품부(검역본부)	식약처(의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자율)	
자체위생관리기준	의무	HACCP 인증 시 면제	

주: 1)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2023.1.부터 2029.1.까지 단계적 의무화가 진행 중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도록 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완료되어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의무가 이미 면제된 축산물 가공업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 해소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함.

3.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안 제12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집유·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생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에 <u>따른</u>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	④ ----- <u>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u> ----- ----- ----- ----- ----- ----- -----

현행	개정안
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신설>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집유·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등의 범위, 제출 자

현행	개정안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	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u> <u>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u> <u>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u> <u>한 자</u>

* 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한 식용란부터 적용함.

나. 검토의견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현행법 제12조제4항⁹⁾에서는 제21조제1항¹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되,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¹¹⁾에서는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함)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 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현행법령에 따르면,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식용란선별포장업¹²⁾이란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식용란의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현행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실정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160호)으로 2023년 3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식용란 판매가 허용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한 식용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가품질검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자신이 직접 수집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¹³⁾하고 있음.

□ 그런데,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집유·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¹⁴⁾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 또는 같

13)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검사명령)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제13조(검사 기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2년 동안 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

은 법 제8조15)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검사명령)와는 별도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각각 두고 있음.

〈 검사명령 관련 규정 〉

「식품안전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명령)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15)제8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2. 삭제 <2015. 2. 3.>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 자가품질검사(항생제·농약) 의무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산란계 농장에서 질병 발생에 따른 항생제 및 농약(농장 주변 제초제)을 사용하므로 농장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4.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용어 통일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법률 제 1548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9.3.14.)으로, 삭제된 제45조제1항제6호의2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7조제3항 및 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생략)	제33조의2(위해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u>위해 평가</u> 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 ---- <u>위해성평가</u>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u>위해 평가</u>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⑥ ----- ---- <u>위해성평가</u> ----- ----- ----- ----- ----- ----- ---

현행	개정안
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u>위해 평가</u>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표) ①·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u>위해 평가</u>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u>위해</u>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45조(벌칙) ① (생략)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 ⑦ (생략)	----- ----- ----- -----. ⑦ ----- <u>위해성평가</u>----- ----- -----. 제37조(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위해성평가</u>-----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호의 죄로 ----- ----- ----- 제1항 제7호의 죄를 -----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봄.

□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용어 통일) 현행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¹⁶⁾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⁷⁾하고 있음.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 그런데,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¹⁸⁾하고 있음.

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위해성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2.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③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 평가’가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실정인바,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제6항·제7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규정함으로써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으로, 법령 해석에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식품위생법」에서도 ‘위해평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위해성평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식품위생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된 조항 정비) 현행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의2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항제6호의2는 법률 제1548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9.3.14.)으로 삭제된바, 개정안은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45조제2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 평가’가 동일한 개념이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기존에 삭제된 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도축업·집유업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비교

구분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HACCP 평가표
도 축 장	○ 도살작업은 가축을 매단 상태에서 또는 가축이 바닥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나) 가) 도살실에는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혈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가 있는가? 라)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육운반차량 상차대까지 연결하였으며,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도축장평가표]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22.
	○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	라)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설치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는가?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22.
	○ 종업원은 작업종료 후 오염물질 및 지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대·운반도구 및 용기 등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마)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항부식성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22.
		가) 모든 종업원은 작업전·중 위생관리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가? (3)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아.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52.
		도체(식용부산물 포함)와 직접 접촉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표면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다. 위생관리(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27.
	○ 가축도살·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 모든 종업원은 작업전·중 위생관리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가? (1) 종업원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 안에 들어올 때 손	아.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52.

구분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HACCP 평가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복 및 앞치마를 갈아입고 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은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2) 종업원은 작업과정중 수시로 손·팔·장갑·앞치마·장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도체가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	다 위생관리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31.
	○ 탕박(湯剝)시설의 수조 및 내장 세척용수조에 탕박 또는 세척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분변이 잔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도축시설, 냉장·냉동설비 및 위생관리 설비·기구 등에 대한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18.
		위생관리기준서는 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가) 청소장소 및 청소주기 나)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약품 및 도구	나. 위생관리(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25.
		종업원은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도체가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	나. 위생관리(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31.
집 유 장	○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처리 대상인 것은 식육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식용 제품을 처리하거나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용기 등은 제품에 교차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다 위생관리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31.
	○ 원유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작업 중 수시로 손을 세척·소독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원유를 직접 취급하는 자는 작업 중 수시로 손을 세척·소독하여 개인위생관리를 하고 있는가?	[집유장평가표] 위생관리 34.
	○ 집유차량의 보냉(保冷)탱크, 검사용 기구, 집유(수유)호스 등은 수시로 이를 세척·소독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검사용기구, 집유호스 등은 세척·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위생관리 31.

구 분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HACCP 평가표
	○ 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위생화를 소독조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원유취급실 출입구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는가?	집유장 시설관리 10.
		작업장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위생관리 32.
	○ 작업 전에 집유(수유)설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비(집유차량의 집유설비 포함)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점검·정비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집유장 시설관리 24.
	○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및 저유조 내 원유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관·운반관리기준서에는 아래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운용되고 있는가? (1) 수유 일시, 유량 및 검사기록 확인방법 (2) 저유조 및 집유(수송)차량 보냉탱크 관리방법	보관 및 운반관리 44
		원유가 집유장에 입고시 집유차량별 입고대장기록을 작성하고 있는가? - 원유온도 : 10℃이하 - 집유농장 기록확인	보관 및 운반관리 37
		저유조는 뚜껑이 있고 8시간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냉 또는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집유장 시설관리 27.
	○ 집유차량의 집유호스 및 저유조 수유호스 등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유의 집유(수유·저장 등)에 사용되는 설비 및 용기는 구분되어 있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위생관리 30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검사용도구, 집유호스 등은 세척·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위생관리 31